



서대문구



Ever8
Serviced
Residence

woman up
서대문



여성인력개발센터
여성새로일하기센터

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· 기관 업무협약서 (안)

호텔 운영체인 “(주)에버에이트”와 교육기관인 “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”, 일자리지원 기관인 “서대문구”(이하 “협약 기업 · 기관”이라 한다)는 아래와 같이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서(이하 “협약서”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“협약 기업 · 기관”은 긴밀한 협력으로 호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“협약 기업 · 기관”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.

1. (주)에버에이트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서대문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5060 퇴직자 등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다.
2.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력을 지원토록 한다.
3. 서대문구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이 호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을 한다.

제3조(협약의 변경)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내용은 “협약 기업·기관”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“협약 기업·기관”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단, 만기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5조(신의성실의무) “협약 기업·기관”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,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6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제7조(협약서 보관)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월 12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	(주) 에버에이트	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
구청장 문석진	대표이사장 문익	관장 박정숙